

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

- 금융감독원, 2024. 4

- 주요 내용 -

◆ 1,300여개*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.

* '22년말 자산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'23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

√ (개요)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

※ '23년중 54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

√ (대상 : 대형비상장주식회사)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

√ (기한)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

√ (위반시 제재) 임원해임권고,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 가능

◆ 소유·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(12월 결산법인은 9.14.까지).

√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이고,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·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합니다.

1 제도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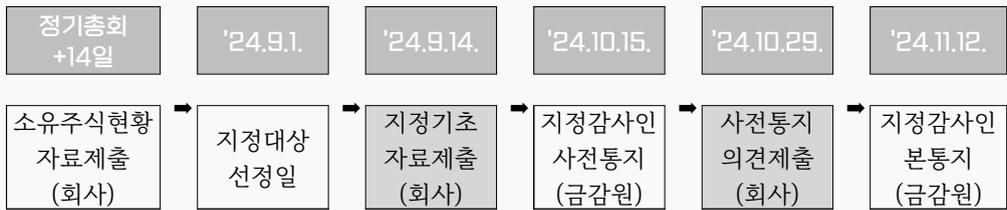
□ 대형비상장주식회사*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(금감원에 위탁)에 제출해야 함(외부감사법 §23④)

- * ①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
- (목적)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·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

주기적 지정제도 개요

◇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택한 상장사(코넥스 제외) 및 소유·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

'24년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 주기적 지정 일정(안)



- (제출기한)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
- (방식)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eacrs.fss.or.kr)을 통해 제출

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

- (제출인) 회사가 직접 제출(☞ 참고 “제출방법 안내”)
- (제출서류) ①공문, ②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, ③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④법인등기부등본
- (안내자료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⇒ [업무자료] ⇒ [회계] ⇒ [외부감사인 선임] ⇒ [외부감사 FAQ] ⇒ “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” 참조
- (위반 시 제재)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, 임원 해임·면직 권고 등의 조치 가능(외부감사법 §29①제2호)

2 유의사항

-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·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

소유경영 미분리 기준

-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% 이상 and
- ②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

- 9.14.까지 「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」도 제출*해야 함

*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(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.14.까지)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하되,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·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 필요 (외부감사규정 §15③)

소유·경영 미분리 판단 사례

- ① (지배주주가 개인) 지배주주가 60%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(대표이사 아님)로 재직 중이면 → 소유·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
- ② (지배주주가 법인 ①) 지배주주가 100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→ 소유·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
- ③ (지배주주가 법인 ②) 지배주주가 55%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→ 소유·경영 미분리에 해당함

3 향후 계획

-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
-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·문의*에도 신속히 답변
 - * 홈페이지 문의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⇒ [업무자료] ⇒ [회계] ⇒ [회계질의] ⇒ “질의회신 및 Q&A신청” 클릭하여 Q&A 통해 질의
 - 전화문의 : (02) 3145-7761/7975

참고 - 제출방법 안내

1 첨부서류

1. 신고서 제출 공문(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 전 사업연도 개시일*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)
 - *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2.1.1
2.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전부사항증명서
3.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



2 제출 방법

-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(<http://eacrs.fss.or.kr>)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
 - *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: 국번 없이 1332(이후 ⑤→①→①)
- ② 화면 상단의 '회사·제출서류'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'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'을 클릭
-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등 작성
 - * 항목별 작성방법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→ “업무자료” → “회계” → “외부감사인 선임” → “외부감사 FAQ” → “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” 자료를 참고
-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
- ⑤ 제출 후 '접수현황'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
 - *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·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(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)